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국외 활동에 수행인력의 중첩·반복되는 심의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의 적용예외 대상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